

예 산 총 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39,554,259	13,186,628
일반회계		400,308,928	12,009,268
특별회계		39,245,331	1,177,360
기타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39,245,331	1,177,360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666,000	19,98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15,363	15,461
	농어촌소득금고사업특별회계	2,129,727	63,892
	기반시설특별회계	81,212	2,436
	성진강댐특별회계	11,600,000	348,000
	옥정호상수원관리특별회계	3,327,592	99,828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9,966,840	599,005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58,597	28,758

제 2 조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 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으로 한다

제 4 조 2019년도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0,7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201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290,629천원」과 같다

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